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126

제출년월일 : 2026.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 기존 재정지원 근거에 ‘기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내실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4조 제3항)

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기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 제1항, 제3항)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3)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6. 10. 15. ~ 2026. 11. 4.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법무팀 의견]

관 계 법 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무팀 검토의견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는 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단체”를 “비영리법인·단체, 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를 “단체, 기업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 다음 연도 ----------.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 비영리법인・단체, 기업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단체, 기업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경제국 청년정책과 최민건
연 락 처	02-3153-8642